

※ 단체회원 자격 별첨 규정 ※

1. 모든 공연작품은 해당단체의 정회원 3명 이상이 작품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정회원이 이사회일 기준 만 2년 이내 2작품 이상에 참여하여야 한다.
2. 4개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만 2년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3. 4작품 중 해당지역(최소 해당지부 2편, 해당지회 1편 이상)의 공연작품이 있어야 하며, 지부가 없는 지회는 해당지회 3편 이상으로 한다.
4. 공연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거나 다른 연출일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한다.
5. 해당지역이라 함은 광역단위 시·도를 포함한다.
6. 최근이라 함은 인준하는 이사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7.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년까지만 인정한다.
8. 공연작품이라 함은 연극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으로
 - (1) 쇼, 퍼포먼스, 거리공연, 워크숍, 학생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극이라 함은 출연진 절반 이상이 학생이거나 학교행사 및 수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재학생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 단, 재학생은 만 20세 미만의 학생신분을 말한다.)
 - (2) 낭독극, 쇼케이스, 단막극의 경우 3편을 1편으로 인정한다.
(단막극의 경우, 20분 이상 50분 이내의 공연을 말한다)
 - (3) 신체극과 무용극, 국악극 등의 경우 협회 소속 연극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은 포함한다.
9. 모든 공연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소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결정한다.